농업자금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0	차보전					세-	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0	차보전					예 (백민		312,989
사업목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농업자금(정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내지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	별 별도	. 적용)						
재원구성(%)	국고	100% 야보전	지방비	-	융	자	-	자부딤	t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이차보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020년 2,989	
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허정은 시 농식품금융부 김종욱		은 사무관 044-201-1 ¹		201-1752		
신청시기	연중				٨	업시	행기관		념은행 등 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	g 보시스	템(AGRIX)	사업시행지	침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トネルガロココ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장 김종욱과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② よめるおって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② 농업종합자금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③ 미곡종합처리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정순일	044-201-1831 044-201-1838
벼 매입자금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장 김종욱차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044-201-1551 044-201-1558
७ ४ च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न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장 김종욱계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E 누어걸여취제키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과 장 이경로	02-2080-7561 02-2080-7558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 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840, 1841
 -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 · 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유재형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32, 1533
- **귀농인창업지원**: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홍근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임지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성구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2337
-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손경문 사무관, (전화 번호) 044-201-2234, 223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창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I /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20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1,420,000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ㅍ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 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u>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u>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④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 ①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 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 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③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④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⑤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②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구분	세부 지원요건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ሡ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③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
	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
	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구분	세부 지원요건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기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⑤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3. 대출방법

-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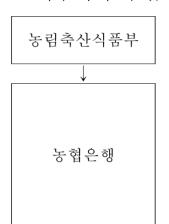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 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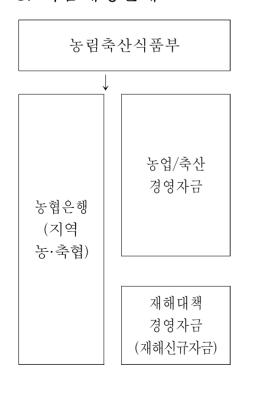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 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② -1. 농축산	세부사업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역증자개발시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 -1. 농축산 생산 지원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라. 고품질약증자개발사업마. 천적 및 곤충사업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기. 중인물기중시합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	총 <u>괄</u>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부 장 신대복	02-3486-0883 02-587-4304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② -2. 가공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윤원습 서기관 김정락	044-201-1811 044-201-1820
O ME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차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라. 기술창업·벤처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박상호 사무관 김범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팀 장 정형민 연구원 김보경	063-919-1330 063-919-133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가. 농기계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❷ -3. 농기계, 비교 드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경선	02-2080-7590 02-2080-7584
동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사무관 이창호	044-201-1891 044-201-1892
10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② -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신재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산업지원 	다. 동촌민박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 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 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 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 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 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 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융자(농	·협자금)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u>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u> 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u>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u>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표 주요내용

[공통사항]

-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 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 <u>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u>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 없는 일반 법인<u>과 농협 및 공공기관</u>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 연령기준: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u>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u>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u>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u>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 스마트팜 시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i)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ii)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 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iii)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u>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u>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v)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vi)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3) 지원한도(대출한도):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3) 지원한도(대출한도):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다. 운전자금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 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u>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u>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 4) 융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 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융자금의 회수

- 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 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2019.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대출금리

-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나. 운영ㆍ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u>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u>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2-라.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

1. 지워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2)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2. 지원요건

- <u>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확인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규모</u> 확인서"를 받아야함
 -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u>"우수기술확인서"</u>를 받아야 한다.
 -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 평가비의 50%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u>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u>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다.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 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제품 기종에 따라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하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 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 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지원 가능함
-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 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 4. 운전자금 지원조건
 -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화 가능)
-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 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 1) 대출기간 : <2-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하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3) 지원한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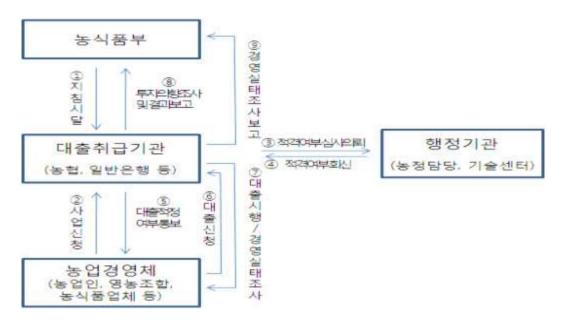
- <u>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u>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기타사항(공통) >

- i)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ii)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 iii)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u>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u>,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 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 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 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화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주무관 위철승	044-201-1838 044-201-1839
미곡종합처리장		양곡부	차장 박은지	02-2080-6305
벼 매입자금 지원	농협경제지주	(사)한국RPC협회	전무 서용류	031-423-0872
	RPC 관련 협회	(사)전국RPC연합회	전무 윤명중	044-866-4204
		(사)대한곡물협회	부장 최용수	042-826-9458

I / 사업개요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 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2. 근거법령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 융 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표/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 비 농협조직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RPC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붙임 1) 참고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벼 확보(계약재배, 매입(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 및 수탁, 계약재배 관련 자금(계약금, 중도금, 선금, 잔금)
 - * <u>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원자금은 상기 농가벼 확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u> 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타용도 사용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타 제재 등 부과)

(<u>타 용도 사용 예시</u>) 타 대출금 상환, 외상 매입금·매출금 상환, 시설·설비 개보수, 장비 구입, 인건비, 공과금, 부동산 및 주식·채권 투자 등

4. 지원형태

- 재원 : 시중은행 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
- 지원기준 :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계약재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지원규모 : 연간 1조 2천 308억원 내외
- 지원형태(사업의무량 150% 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 사업의무량 150% 기준 : 지원액 100% + 자부담 25% + 자금 회전 25%(수확기에 확보한 벼를 판매 후 추가 확보)
- 지원조건 : 연리 0~2%, 10개월 이내 일시 상환
 - * 금리는 매년 기여도평가 및 계약재배실적. 원물확보대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은 매년 9월 1일 기준 실행, 상환은 익년도 6월 30일 기준 상환(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 통합·연합RPC는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방안(붙임 2)"에 따라 우대자금(무이자) 지원
 - * 민간RPC 중 생산자단체로 전환한 RPC는 우대자금(3년간 지원자금 중 최대 25억을 무이자로 전환 또는 추가 지원 등) 지원
 - * 사업참여 농가 등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선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금지
 - * 원물확보대행 자금에 부과된 금리는 원물확보대행 요청 RPC가 부담하여야 함 (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최소 13억원 이상 최대 250억원 이내

<등급별 최대 지원금액>

(단위: 억원)

드그	A	В	С	D	E	F
급액	250	200	150	100	50	25

- * 다만, 비 생산자단체 최대 지원한도는 130억원 이내('20년은 100억원, '21년은 50억원. '22년부터 20억원)
- * 통합RPC 우대자금은 당초 지원기간동안 지원한도액에 관계없이 지원 예정
- *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식품부 고시) 적용

* 자금 배정단위: 1억원

- 지원 신청범위
 - 최대 신청한도 :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량의 80% 이내 신청
 - 최소 신청한도 : 통합·연합RPC 35억원 이상, 일반RPC 13억원 이상
 - * 최소 신청한도는 매년 일반RPC는 3억원(통합·연합RPC는 5억원)씩 상향하여 '22년부터는 20억원(통합·연합RPC는 50억원) 이상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0% 이상 농가벼 매입
 - * 통합RPC는 '20년은 130%, '21년은 14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 기존 통합RPC 우대자금은 '20년은 110%, '21년은 13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 수확기는 당해연도 9.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되. 작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자금은 당해연도 배정 금액 기준(연장 후 반납액 및 미 대출액, 중도 상환액 포함)
- 사업실적 불인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 지원 타 사업자금에서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 집행실적(중복 불인정)

7. 제재 및 감경 기준

-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담 등 조치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지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의무량 150% 기준),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차기 지원시 2년간 0.5%p 추가금리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차기지원시 차감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 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u>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u> 경우: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 적용
 - * 양곡 생산·유통 및 <u>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u> 관련 법규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 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u>"Ⅲ 사업추진 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u>금리 등 적용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u>"Ⅲ 사업</u>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이차

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RPC 이행조건(통합법인 출범 또는 잉여가공시설 폐쇄 등) 미 이행시에는 일반RPC로 전환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지원자금 미대출시 미대출금액을 차기 자금 지원시 차감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기타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 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준용

○ 제재 감경기준

- 지원대상 업체 소재 시·군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사업지역 면적의 30% 이상 피해 발생) 및 화재 등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 이상 피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자금의 100%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을 회수(정책자금 연체금리는 적용하지 않음)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 필요
- 업체별 평균 매입량(최근 5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한 경우에는 미이행금액은 회수(연체금리 적용)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 감경

가. 매입량 12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0.5%p 상향 적용

나. 매입량 10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최고금리 적용

Ⅲ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정부지원 RPC 심사 기준(붙임 1)에 따라 신규 진입 및 제외 평가를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4.30.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5.31까지)

3. 자금배정 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배정 기준을 aT에 통보
- aT는 배정기준을 근거로 업체별 자금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5.31.까지)
 - * 양곡 생산·유통 및 <u>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u>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6. 법규 위반자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배정
-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자금 배정(6.30까지)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자금 대출신청 및 실행
- 자금배정 권한 : RPC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부족한 대출담보능력 상쇄, 안정적 원물확보 기반 확대 등을 위하여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붙임 3 참조)
 -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는 1개의 RPC와 원물확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시행단계

- 대출기간 : 익년도 6월 30일까지(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평가, 전년도 계약재배, 수확기 실적, 논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실적 등 정책사업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자금 연장 가능
- 대출시기 : 매년 9월 1일
 -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용계좌(계정)를 개설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용계좌(계정)를 통하여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등을 하여야 함
 - * 농식품부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배정금액은 전액 환수 후 연장여부 또는 재배정 실시
 - * 연장은 대출예정은행의 대출가능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배정은 "II.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대출 가능 RPC에게 우선 배정하여 수확기에 대출이 실행되어 농가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 * 또한, 매년 연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농식품부의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 대출취급은행: NH농협은행(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 '18.12월 기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이차보전 대출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 '19년 수확기부터 현금 지급 거래 불인정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RPC 협회 등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RPC는 벼 수확기 이전에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 등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급적 전문대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받아야 함
 - RPC 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설능력(건조·저장· 가공)을 정기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시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농식품부 및 aT로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 RPC 협회에서는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 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 등 벼 매입자금 사용 실적 및 용도외 사용 등을 조사하여 익년 <u>2월말까지</u> 농식 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붙임 4, 5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원료벼 매입실적(붙임 9)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원료벼 매입량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u>익년 2월말까지</u>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붙임 6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RPC 시설능력 현지조사표(붙임 10, 11) 및 관련 증빙서 류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RPC 시설능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양곡 생산·유통 및 <u>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u> 관련 법규 위반, 부정업체에 대하여 <u>익년 2월말까지</u> 농식품부로 보고, <u>위반업체의 대표 및 소속 협회는 위반행위 발생 및 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속 협회를 통해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을 농식품부로 보고</u>
 - 보고내용 : 양곡 생산·유통 및 <u>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u> 관련 법규 위반 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 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 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 승계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에는 제외

- 기존 정부지원 RPC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전(양곡가공업 승계 이전) aT에 최근 2년간 운영상황 등을 제출하여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붙임 1)"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주요 확인사항: 시설·부지 양도, 운영자금 확보, 고용승계, 주요거래처 유지여부 등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u>7. 제재 및</u>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6.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재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제재기준이 지원 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제재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 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가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벼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제재기준을 적용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및 "Ⅱ. 주요 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워중단 등 조치

가) ② 개별기준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위	반사항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연간 3회 또는		
			한산 1외	2년 연속	3년 연속		
		① 금고형 이상 벌칙에	2년간 0.5%	3년간 1.0%	3년간 2.0%		
	기 아고 계치 이트	처한 경우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가.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② 벌금형 벌칙에 처한	1년간 0.5%	2년간 10%	3년간 1.5%		
	옷 <u>모스 </u>	경우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u> </u>	③ 선고유예·기소유예	1년간 0.3%	1년간 0.5%	2년간 1.0%		
	법규위반	벌칙에 처한 경우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④ 과태료 처분	경고	1년간 0.3%	1년간 0.5%		
나)		(1) (1) (1) (1) (1) (1) (1) (1) (1) (1)	7035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7)	나. 공공비축 선	난물벼 임의 처분과	3년간 1.5%	5년간 2.0%			
	관련한 벌칙	에 처한 경우	추가금리 적용	추가금리 적용	-		

- * 기타 양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
- * 추가금리 적용에 따른 최종 적용 금리한도는 정책자금(금융자금) 기본금리('20년은 <u>3.32%) 내로 제한</u>하여 적용
-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함 (예시 :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0.3% 추가금리 적용)

다)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중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위반인 경우는 대출금 회수 및 농협은행의 연체 대출금리 적용 조치하고,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령의 위반건(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위반 포함)에 대해선 다음 자금 지원시기부터 "② 개별기준" 적용 조치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Ⅳ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익년 2월말까지)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한 RPC는 정부지원(시설 및 매입자금 등)을 우대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우대 조치
 -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7)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붙임 8)를 발급할 수 있음.

3. 2020년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계획

- 평가기관 : aT(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aT, 지자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전년도 12.5.까지)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 aT는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5.15.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 확정(6.30까지)

<붙임 1>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양곡관리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에 한함) 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 중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단, 부도 RPC 인수업체의 경우 정상 운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18년 신청분부터 적용)
- ㅇ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음
-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 명의로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미만 운영
- ② 법규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세부 조사방법은 붙임 6 참고)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 집진시설

- 품질검사 시스템 : 원료 벼 반입 시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 양곡을 외부 자연환경 및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기밀성 확보)
- * 바닥. 벽체 및 지붕 등이 방수가 되어야 함
- * 환기시설(벤틸레이터 또는 강제 환풍기)은 창고별로 2개 이상(방충문 또는 방충망 설치)
- * 지붕 슬레이트 또는 석면 마감재가 창고 내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가공능력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계약기준((1) 도정기계, (2) 공장시설· 환경기준, (3) 위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주요 기준 : 석발기 2대 이상, 정미기 2대 이상, 색채 선별기 2.5톤/시간당 이상, 생산능력 2.5톤/시간당 이상, 자동계량기, 금속검출기 등
- 기타 : 본 시설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 체결요령의 계약기준을 준용함

나. 운영기준(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4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최소 벼 매입량(5천톤) 및 최소 가공율(50%), 도정수율(72%), 쌀 평균가격(2,400원) 등 감안

- 취급물량(① ~ ⑤ 동시 충족 조건)
- ① 벼 5,000톤 이상 매입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벼 매입량 3.000톤 이상(미만)으로 운영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자격(RPC 1만톤, DSC 3천톤) 기준 감안
- * 변 생산량이 1만톤이 안되는 지역의 경우엔 해당 시군 생산량의 50% 이상 매입시 예외 인정 (타항목도 동일 적용)
- ② 쌀 3,200톤 이상 판매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평균 도정수율(72%)과 가공율(90%) 감안
- ③ 수확기 벼 4,000톤 이상 매입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연간 벼 매입량 대비 수확기 벼 매입량이 평균 80% 내외임을 감안
- ④ 원료벼 계약재배 1,000 이상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평균 계약재배 확보량 50% 내외 수준 감안하여 매년 500톤씩 상향 예정
- ⑤ 매입량 대비 가공율이 50% 이상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연간 벼 확보량 대비 쌀 판매물량이 90% 수준 감안
- 당해연도 운영자금 : 자부담금 이상 확보(최소 2.5억원 이상)
 - * 운영자금(운전자금 또는 경영자금): 유동부채 총액 유동자산 총액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 자부담(20%) 체계 전환과 최소 신청액 10억원(자부담 2.5억원) 감안
-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 F등급 중 15점 이상 업체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F등급 RPC 등 적용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u>벼 재배면적</u> : 1,500ha 이상 확보(최신 시군 행정통계 자료 활용)
 - * 단, 친환경, 특수미 전용 RPC는 인증단지 등과의 계약재배면적으로 적용(연접 시·군 포함)
- 통합 RPC의 위성DSC 및 개별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 다만, '17년 이전에 설치·가동 중인 도정업체 중 시설 및 운영실적이 심사기준이상 충족하고. RPC당 벼 재배면적이 1.500ha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 허용
 - * 문1) A군 <u>벼 재배면적</u>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4개소와 정부지원 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 10,000ha [(4개소 × 1,500ha) + (2개소 × 1,000ha)] = 2,000ha ⇒ RPC 1개소 또는 DSC 2개소 가능
 - * 문2) B군 <u>벼 재배면적</u>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5개소이며, RPC 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정부지원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 ► 10,000ha [(4개소 × 1,500ha) + (2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0ha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 문3) C군 <u>벼 재배면적</u> 3,400ha이고, 정부지원 RPC 1개소와 정부지원 DSC 1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 3,400ha [(1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900ha ⇒ BPC 또는 DSC 모두 불가
 - * 벼 재배면적은 최신 시군 행정통계 자료 기준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 ① 시설기준 미달 RPC(당해년도 시설능력 조사결과 기준)
 -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18년도 사업시행지침 적용(1년만 유예)
- ② 운영기준 미달 RPC(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기준)
- ③ 기타
 - 쌀산업기여도 평가 미 신청
-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 통합탈퇴 RPC
- 해산된 통합 RPC
- 양곡 생산·유통 및 <u>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u>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등
- 통합RPC 지원 조건 미 충족자
 -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RPC 제외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음
 - ※ 위 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 시·군의 모든 RPC가 제외기준 해당시 1년간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 정부지원RPC 제외시 1년간 유예기간 적용(벼 매입자금 지원하되, 최고 금리 적용)

<붙임 2>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통합 및 연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 및 연합 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보급종 우선배정 등
- 단기간 내에 통합이 어려운 경우 연합RPC로 일정기간 운영 후 통합으로 전환할 경우 벼 매입자금 및 시설개보수 우대지원
- 연합RPC는 3년간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연합RPC 운영 후 취급기준(벼 10천톤 매입, 쌀 7.5천톤 판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개보수 조건부 지원(5년 이내 충족)
 - * 단,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되고, "II. 주요내용 중 "II.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및 연합 RPC 참여업체가 탈퇴(해산 포함)시 탈퇴 및 해산업체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해산 포함)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및 해산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2년차 이상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간주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 RPC 이사회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참여농협 등에서 지급)
-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지자체 등)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 및 연합 모델 제시,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 ① 2개 이상 농협RPC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후 통합·운영하는 경우
- ②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50% 이상이 참여하여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③ 농협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간 합병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
- ① 농협RPC와 민간RPC간 별도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농협RPC와 민간RPC간 자산인수(DSC, 비RP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③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 업체(비RPC) 또는 농협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④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민간DSC 또는 농협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 (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 ① 2개 이상 민간RPC가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③ 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 ④ 2개 이상 민간RPC가 백미 전용 도정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 ⑤ 민간RPC가 민간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IV유형(광역)
- ①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운영하는 경우
- ② <u>1개의 RPC가</u> 2개 이상의 타 시·군 DSC·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연합 I유형(농협 + 농협)
- (농촌연합형)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이 모두 참여하여 연합·운영하는 경우
- 공통 기준
- 통합 및 연합 대상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이어야 함
- 통합 인정 후 도정시설은 1개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 * 다만, 주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인정 가능

- 통합RPC로 인정받은 경우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RPC에 참여하는 DSC(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계약체결)는 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 1개 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취급량의 80% 또는 최소 3천톤 이상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불인정 및 제외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통합 또는 연합 RPC를 구성한 경우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 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
- 통합계획(통합법인 출범, 잉여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원료벼 확보 및 마케팅창구 단일화 등)을 미 이행한 경우
- 통합 및 연합에서 탈퇴한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해산된 통합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통합 및 연합 인정 절차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연합 I유형 : 주관 농협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과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 희망 농협 또는 업체 → 시·군(검토의견 첨부) → 시·도(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IV유형(광역) : 농협간의 통합은 I유형 적용, 민간이 포함된 통합은 Ⅱ유형 적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평가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 평가방법 :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시 별도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u>"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u> 적용(일반RPC 전환,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우대자금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간 : 통합 5년, 연합 3년
- * 연합 후 통합시에는 6년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및 연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동일 시·군 지역통합>

- (A)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 × DSC·비RPC 농협수)
 -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 (B) 2개 RPC 통합 : (10억원 × 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 (C)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 RPC수) + (2억원 × DSC · 비RPC농협수)
 -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 (D)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RPC수) + (2 × DSC · 비RPC농협수)
 -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 (E)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 × RPC수) + (2 × DSC·비RPC농협수)
 -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 (F)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통합RPC수) + (30억원 × 일반RPC수)+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연합유형>

(G) (A)타입 적용

<통합 유형별 지원타입>

○ 통합 I -① : B 또는 C타입

○ 통합 I -② : A타입

○ 통합 I -③ : A타입

○ 통합Ⅱ-① : B 또는 C타입

○ 통합II-② : B 또는 C타입

등합Ⅱ-③: A타입

○ 통합Ⅱ-④ : A타입

○ 통합III-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Ⅲ-② : A타입

○ 통합Ⅲ-③ : C타입

○ 통합Ⅲ-④ : B타입

○ 통합Ⅲ-⑤ : A타입

○ 통합IV-① : D 또는 E 또는 F 타입

○ 통합IV-② : F 타입

○ 연합 I -①: G타입(A타입)

○ 연합 I -② : A타입

원물확보 대행사업

- 민간RPC가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을 대행업체에 배정
- 소속 협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 승인 후 대행업체에서 자금 대출(부과된 금리는 RPC에서 부담 원칙, 추후 수수료로 정산하여야 함)
- 대행업체에서는 대출받은 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대행업체의 물량확보 방식(계약재배, 수탁출하, 단순 매입 등)은 자율)
- RPC에서 요청할 경우 원료 벼 입고(대행업체에 보관시설이 없어서 수확기에 바로 RPC에 원료벼를 입고하거나, 대금지급이 일정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채권보전방법은 쌍방간 합의 결정)
- RPC는 원료벼 입고 후 2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 (장기 보유형)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 * 민간RPC 또는 대행업체는 사업의무량 중 나머지 50% 물량을 상호 협의하여 수확기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장기 회전형) 대행업체는 1차 대금 입금 후 수확기 내에 원물 추가 확보 (50%),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수탁사업 시행요령

- 라) 계약체결
- 마) 사업대상RPC가 수탁희망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약정 체결하고, 사업대상 RPC는 벼 수탁판매 약정농가 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
- 바) 들녘경영체 등 계열화단지를 중심으로 RPC별로 수탁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실시 후 수탁계약 체결
- 사) 수탁계약은 RPC와 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함(단, 법인화가 안 된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계약에 대한 행정처리는 일괄수행가능)
- 아) 계약금 및 선도금(우선지급금)은 계약체결 또는 수탁물량 인수도시 RPC가 농가 또는 법인에 지급하되 지급비율(50% 미만)은 농가 등과 자율적으로 결정
- 자) 선도금의 기준가격은 해당 RPC에서 동일품종 매입가격으로 결정
- 차) 계약금 및 선도금의 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현금 지급 불인정)
- 카) * 계약금과 선도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 가능
- 타) 수탁물량 인수도
- 파) 수탁사업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수탁약정 물량을 RPC에 판매위탁하고 RPC는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 하) 수탁보관증은 약정농가와 RPC가 상호날인하여 농가와 RPC가 각각 보관
- 거) RPC 책임하에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부터 판매시까지 수탁물량을 안전하게 보관
- 너) 수탁물량 보관 중 도난, 변질, 부패, 침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RPC가 부담

- 더) 판매 및 정산
- 최종정산은 공동계산방식으로 정산(투기를 조장하고 상생 취지를 훼손하는 개별정산은 불인정)
- 러) 판매 후 수탁판매 대금에서 선도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통장으로 지급
- 머) * 공동정산 : 판매 완료 후 또는 기간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하는 조건 만족시에만 인정)
- 버) * 개별정산 :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당시의 시가로 정산
- 수수료는 RPC가 농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약정농가에 사전 고지 후 사업 추진
- 서) 수탁협의회 구성
- RPC는 수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선도금 지급비율, 수수료율, 판매 및 정산기준 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가대표(단지대표 등), RPC, 농협, 농관원, 시군 등이 참여한 수탁협의회를 구성 운영

<붙임 5>

RPC 벼 매입실적 조사 방법

1. 목적

- O 정부지원 RPC에 지원하고 있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매입 실적을 현장 확인하여 정책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2. 조사대상 업체 : 201개소
 - O '19년에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RPC 및 신규진입 신청예정자
 - RPC 201개소(농협 135, 민간 66)
- 3. 조사대상 물량
 - 기간('19.1.1~ '20.1.31) 중에 RPC가 실제 매입하여 농관원에 제출할 자료
 - 금회조사는 <u>'19.1.1~12.31까지(12개월분)와 '20.1.1~1.31(1</u>개월분) 매입실적을 각각 조사함

4. 조사 항목

- 공공비축매입(산물), 계약재배매입(매취·수탁), 일반매입(매취·수탁), 공매, 수확기 자체매입(물량·매입단가), 야적물량, 수탁지급 대행실적
- 조사 항목별 매입단가가 각기 다를 경우 항목별 총 매입금액을 항목별 총 매입물량으로 나눠 산출
 - * 매입단가 = 매입금액(천원)/매입량(톤)×40kg
- 5. 조사 요령
- 공공비축용 정부 산물수매 조사시 매입단가('18년 산물벼 단가 적용)
 - * 포대벼 포장 제비용을 제외한 상기 금액으로 매입금액 산정
- 총물량은 톤으로 기재하고, 단가는 40kg/대 평균가격을 기재
- O 계약재배 : 재배품종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RPC로 출하되어 구분 보관하는 물량만 인정
- O 수탁매입 : 농가와 RPC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선도급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 결정하며,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만 수탁

매입으로 인정

- * 수탁가격: 해당 RPC의 동일 품종 실제 매입가격(농가와 RPC간 합의 결정)
- 특별한 사유없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확인
- O 수확기 매입: '19년산 신곡만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19.9.1~'20.1.31)
 - * <u>'19.8월에</u>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u>'19년산</u> 신곡이 확인될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
 - * <u>'19.9월</u> 이후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u>'19년산</u> 신곡이 아닐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미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 : <u>'19년산</u> 신곡만 사업의무량 매입으로 인정(수확기 매입 + '20.1월 중 매입량)
 - * 세부기준은 수확기 매입기준과 동일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실적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이 소재한 사무소에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을 신청한 RPC에 대하여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를 확인하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을 조사(수탁물량도 확인)후 RPC가 소재한 사무소 및 해당지원에 조사결과를 공문 통보
- 6. 확인 내용
- O RPC가 매입한 벼 확보 실적과 비교하여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
- 관련 장부, 농가통장 입금 자료(통장 미 입금시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 * (참고) '19년도 수확기부터 현금거래 실적은 불인정 예정
- 현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비교 검토
- O 수탁물량 확인, 허위여부 점검
- 벼 수탁판매약정 농가 관리대장 및 수탁계약서
 - * 수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탁 미 인정(매입(매취)로 인정)
- 농가 수탁판매약정 체결 서류
- 선도금 지급 서류, 농가 수탁보관 발급 서류(농가 수탁증 등)
- 벼 수탁보관 정산 서류(수수료 포함)

- RPC별 수탁물량 확인(창고 등)
- O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에서 확인)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 미 인정)
- 실제 RPC 입고물량(창고 등)

7. 인정범위

- 원료 벼 매입관리 대장(서식1)에 작성 된 매입실적을 인정
- O 자체매입 실적은 연산구분 없이 모두 인정
- O 수확기 자체 매입량은 '19년산 신곡만 인정(구곡 미 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도 '19년산 신곡만 인정
- 공매는 연산구분 없이 인정(자체매입에 미포함, 합계에만 포함)
- O 순수한 벼(메벼·찰벼·특수벼) 매입만 실적으로 인정(쌀, 보리, 잡곡은 미 인정)
- 단,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상 벼를 쌀로 가공·판매 후 정산하는 쌀 수탁은 인정(벼로 환산해서 실적 인정, 쌀 매입량 ÷ 0.72)
- 농가벼를 직접 매입한 경우와 비RPC농협에서 매입한 경우만 인정
- 비RPC농협: RPC를 운영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 자도·타도간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 조곡상 거래는 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시에만 인정
- RPC간 거래는 미 인정(단,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O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실적도 조사
- 통합RPC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경우 통합RPC 실적으로 인정(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격, 물량 등을 명시하고 통합RPC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의결 서 또는 증빙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 통합RPC의 참여농협 현황은 붙임의 '통합RPC 현황'을 참조
- O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확인시 농관원은 RPC와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간 체결 계약서를 확인 후 벼가 보관된 장소 파악(농협, RPC)

- 계약서가 없으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미 인정
- 계약서가 있으나 벼가 농가에 있으면 미 인정
- 계약서가 있고, 농협 또는 RPC에 벼 보관(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
- 수탁인정 조건에 해당되나 선도금 금액이 아닌 최종 정산가격으로 농협이 농가에 지급시에는 농협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농협이 우선 모든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차후 RPC에서 차액을 받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농협이 선도금, RPC가 선도금의 차액을 지불한 경우가 원칙적인 원물확보 (수탁지급) 대행에 해당함

<용어정의>

- 1) 수탁: RPC가 농가로부터 벼 값의 일부(농가와 협의결정)를 지급하고 매입· 보관하고 시세에 맞춰 판매함으로써 보관, 가공 등 제반 비용의 차액을 정산 (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 조건)하고 수익의 일부를 농가에 돌려 주는 제도(농가는 판로확보가 가능, RPC는 벼 가격의 일부 금액으로 많은 양의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관·관리를 맡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이 가능)
 - * 선도금을 주지 않고 RPC가 판매 후 정산한 것도 수탁에 해당함
 - * '18년 실적('19년초 조사 시)에 한해 개별정산(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
- 2) 매입(매취) : RPC가 농가로부터 매입당시 시세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하는 제도(모든 수익은 RPC 소유)
- 3)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 값의 일부를 미리 지급 한 금액(판매 후 정산시 나머지 금액 지급)

8. 기타

- O 조사 업체에서 자료 제출거부 또는 자료 미비치 등 확인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사유기재
- 기타 조사관련 의문사항은 농관원 본원 품질검사과(054-429-4114)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로 문의

- *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조사는 지양(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 O 영업상 답변이 곤란한 사적 질문 및 조사내용 누설 금지, 강압적이고 고압 적인 조사 태도를 지양하고 친절히 응대
- 9. 행정사항
 - O RPC(DSC) 원료벼 매입 실적 확인 및 수탁대행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u>. 20(목)까지</u>
 - 지원 → 본원 : <u>2</u>. <u>25(화)까지</u>
 - * 지원에서는 검토 철저 : 매입가격이 고가인 경우, 매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톤 \rightarrow Kg 환산여부 등) 등
 - 본원 → 농식품부 : 2. 28(금)까지
- <매입량 조사 예시>
- <예시1> 통합RPC 참여농협이 통합RPC와 무관하게 벼 매입 후 통합RPC에 인도한 경우(이사회 의결이 없는 경우)
 - ⇒ 참여농협이 매입한 실적은 통합RPC 실적에서 제외
- <예시2> 수탁선도금을 주지 않고 농가와 수탁한 경우
 - ⇒ 수탁 계약체결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수탁인정
- <예시3> 수탁대행농협과 RPC간 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농협이 수탁대행 하였을 경우
 - ⇒ 수탁매입 실적 미 인정
- <예시4>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수탁잔금 금액과 다르게 농가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 ⇒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잔금을 농가에 정산해 준 경우만 수 탁매입으로 인정, 농협이 별도 정한 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농협이 매 입한 것으로 간주
- <예시5> 일반매입시 3천톤은 50,000원/40kg으로, 2천톤은 53,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단가

- ⇒ 매입단가(40kg) : 51,200원 = (3,750백만원+2,650백만원)/5천톤×40kg
 - * 3,750백만원 = (3,000,000kg ÷ 40kg) × 50,000원
 - * 2,650백만원 = (2,000,000kg ÷ 40kg) × 53,000원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관련 참고사항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업체가 대출받은 자금보다 적게 매입하거나, RPC로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 Ⅱ. 주요내용, 7. 제재 및 감경 기준 적용(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적용)
- 배정받은 금액은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와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단계와 4. 사업시행단계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요청RPC에 차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시 원물확보 (수탁지급) 대행 업체가 반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

<붙임 6>

RPC 및 DSC 시설능력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O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출자한 시설도 조사에 포함
- □ 조사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 조사시기 : 매년 2월 20일까지
 - O RPC(DSC) 시설능력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 20(목)까지
 - 지원 → 본원 : 2. 25(화)까지
 - 본원 → 농식품부 : <u>2. 28(금)까지</u>

2. 조사항목

- O 원료투입구 시설별 보유현황 및 투입능력
- O 건조시설(순환식, 연속식, 사각빈, 사일로)별 보유현황 및 연간 건조능력
- O 저장시설(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별 보유현황 및 연간 저장능력
- O 연간 정곡 가공능력
- O 매입장비(호퍼스케일, 제현율 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
- ※ RPC 시설 및 장비의 용량 및 규격은 성적서 등에 따른 규격을 인정
- * 조사 대상업체는 조사 시작 기준일 <u>7일 전부터 3일 전까지</u> 시설 별 규격서 (성적서)를 준비하여 농관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규격서 미비치 업체는 시설능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조사요령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 집진시설

○ 건조능력

- 순환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1.7회전(1일)×25일)
 - * 건조기준 : 함수율 24%→16%, 시간당 0.8%/hr 건조, 원료투입·배출에 1.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 1.7회전 = 20hr / [{(24%-16%)/0.8%}+1.5hr]
- 연속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20시간×25일÷(4회전×0.5시간))
 - * 건조기준 : 16%건조를 위해 평균 건조기 4회 통과, 건조기 통과에 0.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저장빈 및 사일로 : 저장능력을 건조능력으로 100% 인정(상온통풍)

○ 저장능력

- 사각빈 및 사일로 : 설계도 및 기기별 사양 인정(가공시설의 원료탱크와 겸용 사용시 제외)
- 평창고(1,000㎡(300평) 기준)
 - (i)창고높이가 5m 이상 : 3.3㎡(평)당 4톤

 - * 창고높이가 5m 이상으로 3단 적재 할 경우 저장능력은 평당 약 4톤 수준

○ 가공능력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근거로 조사
 - * 가공능력 산출 : 시간당 가공능력 × 8시간/일 × 250일 기준
 - * 도정기계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른 가공능력과 신고증의 가공능력이 다를 경우 변경 신고 후 재조사 실시

O 색채 선별기

-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라 색채 선별기 능력을 조사

○ 매입 장비

- 호퍼스케일, 제현율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을 조사하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 건조능력 조사 산출 예시

- 시설현황 : 순환식 건조기 6톤 4대, 사각빈 50톤 12기, 싸일로(상온통풍) 200톤 3기
- ⇒ 건조능력 산출 : 2,220톤(少+↔+)
 - ② 순환식 건조기 건조능력 : 6톤 × 4대 × 1.7회전 × 25일 = 1,020톤
 - 및 사각빈 건조능력(상온통풍) : 50톤 × 12기 = 600톤
 - ⓒ 사일로 건조능력(상온통풍) : 200톤 × 3기 = 600톤

□ 저장능력 조사 산출 예시

<예시1>

- O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사일로 400톤 3기
- ⇒ 건조능력 산출 : (50톤 × 12기) + (400톤 × 3기) = 1,800톤

<예시2>

- O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평창고 100평
- ⇒ 저장능력 산출 : 1,000톤(⑦+印)
 - ② 사각빈 : 50톤 × 12기 = 600톤
 - 내 평창고 : 64.6평 × 2.3톤 × 3단 × 91% ≒ 400톤

<붙임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294호

「양곡관리법」제22조제1항 및「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 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19년도 정부지원 미곡종 합처리장(RPC)"을 공고합니다.

> 2019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RPC(135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항 합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합 협 합 협 협 협 협 협 합 협 협 합 협 협 협 합 협 합 협 합	고 성 등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협	괴산농협 남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내수왕이 전원 등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형 합 협 합 합 합 협 합 합 협 합 합 협 합 합 합 협 합 합 합 협 합 합 합 협 합 합 협 합 합 합 협 합 합 협 협 합 합 협 협 합 합 협 협 합 합 협 합	河水 写 语 阳 粉 容 吗 明 不 的 的 的 的 有 的 的 有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 惠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曾	· 통항 함 주 (우) 항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함	· · · · · · · · · ·

구분	경기	7L O]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	강원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울산
	파주통합			천안통합	장수농협	영광통합		
	팔탄농협			태안농협	정읍통합	영암통합		
	팽성농협				황등농협	완도농협		
					회현농협	장성통합		
						장흥통합		
						함평통합		
						해남옥천		
						화산농협		
						황산농협		
						흥양농협		
계	20	9	10	19	20	26	15	16

민간RPC(66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一七	인천	⁄ે 1વ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강화농산	새마을금고	광복영농	금성농산	금양머쉬본	고흥미곡	건양RPC	송림영농
	대한농산	푸른곡산	우농RPC	대동RPC	남농영농	금호미곡	동양미곡	창원청결미
	독정RPC	햇곡원		대원RPC	동진협동	나주평야동강	상일RPC	평화영농
	미농RPC			새들만RPC	등룡RPC	대우미곡	유천RPC	
	미아토			신금산영농	라이스프라자	무등미곡	조양곡물	
	안성곡산			예산RPC	명천영농	수영산업	청구RPC	
	이천농산			천수만RPC	새만금농산	여주농산	풍년RPC	
RPC	협성농산			천안RPC	오성RPC	영암미곡	한가위RPC	
업체명	화성농산			황산벌RPC	완주영농	인수영농	한국라이스텍	
				석성농산물	에브라임코리아	조양영농	합동RPC	
					이택영농	주영농산	화원미곡	
					㈜삼보		아자개영농	
					㈜옥정영농			
					중신영농			
					지리산쌀			
					한결영농			
계	9	3	2	10	16	11	12	3

제 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확인서

	업체명	홍 길 동			
어ᆌ저버	대표자명	○○미곡종합처리장			
업체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신고번호	세종-1호			
양곡가공업 정보	신고일자	2012.12.12.			
	일 가공능력	<i>40톤</i>			
<u> </u>	기간	2020.7.1.~2021.6.31.			

위 업체는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20년도 정부지원 미곡 종합처리장(RPC)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붙임 9> 벼 매입실적 관리대장 (RPC명:

① 매입일자 (월/일)	② 계약 여부	③ 매입 방법	④ 매입처 (농가,업체명)	⑤생산 년도	⑥수량(kg)	⑦매입가격 (원)	⑧매입단가 (40kg/원)	⑨수탁 선도금 (40kg/원)	⑩수탁 정산일	⑪비 고 (계약품종,수탁정산액, 기준가격등)
2018-1-2	계약	매취	홍길동	2017	1,600	2,320,000	58,000			추청벼
2018-9-15	계약	수탁	김철수	2018	3,210	2,006,250	25,000	25,000	2019.2.10	오대벼 정산액4,843,900원 기준가격60,360원
2018-9-28	일반	매취	부흥농산	2017	250,000	331,200,000	52,992			
2018-10-22	일반	수탁	이만기	2018	2,050	1,025,000	20,000	20,000	미정산	기준가격 62,000원

- ① **벼 매입 일자별 실적을 작성**(매입기간: 2018. 1. 1.~2019. 1. 31.까지 실적)
- ② 계약재배 여부(계약 또는 일반으로 구분)
 - 계약재배는 모내기 전 품종명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재배한 벼 매입 실적 임.
- ③ 매입방법(매취 또는 수탁으로 구분)
 - 매취는 매입 당시 거래가격으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한 경우
 - 수탁은 벼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쌀(벼)로 판매 후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벼값의 50%이상 지급 시에는 매취로 인정
 - * '19년도 벼 매입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붙임 5. "수탁"의 용어 정의 참고)
- ④ 매입처: 농가명 또는 비RPC농협 등 벼 매입처 기록
- ⑤ 생산년도: 매입하는 벼의 재배(수확) 년도 ⑥ 수량: 매입한 벼를 kq단위로 기록
- ⑦ 매입 가격: 실제 지급한 벼 매입가격 기록
- ⑧ 매입 단가: 매입한 벼를 40kg단위로 환산한 가격(녹색부분 자동계산 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⑨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 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값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40kg기준) *벼 값의 50% 이상 지급 시는 수탁이 아니고 매취 임
- ② 수탁정산일: 쌀(벼)로 판매 후 최종 정산한 일자 기록, 최종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산으로 기록
- ⑪ **비고**란에는 계약재배 품종, 수탁 최종 정산액, 수탁 기준가격(미정산시는 계약서 상 기준가격, 정산 완료시는 최종 정산액을 40kq환산가격)기록

업체별 건조능력 조사표(업체명:)

○ 건조기 시설

순환식 건조기				연속식 건조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비고
계			계			

○ 저장빈(사각빈) 및 사일로

저장빈			사일로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비고	
					(1)		
계			계				

- ※ 저장빈과 사일로의 건조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저장능력(시트2)자료와 비교 검토.
- 저장능력만 있고 건조능력이 없는 빈과 사일로는 제외하고 조사(저장능력의 수량과 같거나 적어야 함)
- 건조, 가공능력

건조능력	가공능력	가공능력
합계(톤)	(톤)	(시간당/톤)

○ 매입장비(단위 : 대, 개)

호퍼	제현율	동력	원료
스케일	측정기	제현기	투입구

<붙임 11>

업체별 저장능력 조사표(업체명:

■ 저장시설 능력

저장빈((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높이 5M이상 기준)		총 저장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총 저장 능력 (톤)

[※] 저장빈과 사일로의 저장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건조능력(시트1)자료와 검토.

■ 저온, 냉각, 단열시설 능력

저온(평창고)			냉각(빈,	사일로)	단열(/	ш¬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비고

※ 저온시설: 평창고중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

※ 냉각시설: 빈, 사일로중 냉각기가 설치되어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동식 냉각기 포함)

※ 단열시설: 사일로중 우레탄 처리된 시설ば각시설과 단열시설은 중복 가능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 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 2019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9년도 지침 적용

I /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00	550,000	550,000	550,000
o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00,000	550,000	550,000	55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농어촌지역**¹⁾(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u>대출</u>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u>융자</u> 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u>용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u>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u>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u>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u>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u> 신규(<u>전원</u>)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u>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u>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u>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u> 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사업대상지역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1)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음 · 면의 지역
 -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quot;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m'이하

- 가.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u>신축(개축, 재축 포함)</u>,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u>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u>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m^2 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u>개량하지 않는 경우**는</u>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 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 기존 별동의 부속 건축물이더라도 개량하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
-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 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 사. <u>증축</u>,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 가.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 **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 장으로 대체
 - ※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1억 2천만원
-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u>4,000</u>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u>2,000</u>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다	H <u>4,000</u> 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다	H <u>2,000</u> 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u>서식6</u>)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u>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u> 농·축협에 송부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u>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로 증빙 가능

<u>※</u> 세금계산서 <u>및 계산서</u>: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4,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에서 융자·대출 가능
 - *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u>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u>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 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 **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 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 (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 사업추진체계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전년도 12.1~12.31까지 제출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 연도 1.15까지 통보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당해 연도 1.15~2.15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u>신문</u>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1차 선정(2.28까지)**, **추가 선정(11.30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기간: 수시제출(서식2)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완공대출금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 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u>배우자, 세대원</u>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 도면으로 사용 가능
 -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연장시는 '21.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u>'20.12.15</u>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u>'21.8.3</u>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5>
 -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 에서 제외
 -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
 -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농협으로 송부하도록 시·군·구에 요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 사업실적확인서,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 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u>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u>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 희망자(입주예정자)
 -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0.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u>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u>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u>'20.12.15</u>**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u>'20.12.15</u>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1.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u>'21.8.31</u>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 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m²초과 여부 확인 등 <u>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u>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사 본 포함)을 해당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상담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 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 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여부*를 확인
 - * 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u>'20</u>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u>재원</u>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7>」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5>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u>'20.12.15일까지</u> 원인행위(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4. 성과측정

- 가. **'20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86.0%
 -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0.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업평가 및 환류

-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나.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다.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등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6. 사후관리

-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① 증축(연면적 150m²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 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 <u>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u> <u>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변경</u> 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 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현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7. <u>2021년도</u>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u>2021년도</u>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3>**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u>2020. 12. 31일까지</u>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hwp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별송)

<서식3>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별송)

<서식4> 다음연도 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xls(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별송)

<서식6>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2월말(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분기별 (시・군・구 → 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생	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세대주 또	는 배우기	아 여부 : 세대	대주 (), E	배우자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등으로 본인 시실	여부, 기족관계	증명서로 배우자 여	부 확인
					하나에 해당하는지 구마을/직원용 약	
4. 사업 내용 ※ 증축, 대수 한하여 시	누선, 리모	델링 등은「건			(대수선 포함) 등)를 이행하는 ?	건축행위에
5. 사업우선	순위 해	당 여부 (※하	당하는 모든	란에'✔'표기)		
□슬레이트 지	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	자, □어린자녀(()세부터 초등학·	생까지)보육가정, □]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	두자 중 노	후·불량 주택개	랑자 또는 무주틱	백자, □귀농·귀촌	 	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	구 내 주택건축	취망자(입주예정	자)		
5.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	든 란에 '✔' 표	Eフ)		
□ 사업대상 기	기존 주택	의 지붕이 슬	레이트 인지 여	부		
□ 사업신청지	-가 주민된	등록등본상 속	한 가족이 다문	:화가정 인지 여	여부	
□ 농촌주택표	준설계도	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	촌주택개	왕사업 대상자	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기부등	본 등 농 및 대출 [:]	·촌주택개량시 취급기관에 제	업 대상자 선	정을 위해 확	등), 재산세 과세지 인이 필요한 정 대출취급기관이 곤	보를 해딩
			유 사실이 허위로 베 대하여 이의를		사업대상자 취소(서 겠습니다.	· 제혜택 추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	인하였으며 20	20년 농촌주티	백개량사업을 신청	청합니다.
	년 4	일 일,	신청인 :	(서면	녕 또는 인)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	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²)				구 조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격	(B)	공정률 (C=B/A)
사업실적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B,D]) - E * 잔금 대출 = [Min(A,D)×C(⇒[B,D])]] - E	
천원	천원	\ \{\bar{\}}	선원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044-201-1751
53 <u>40</u> 437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2
농협은행	노어그으ㅂ	팀 장 김종인	02-2080-7561
	농업금융부	과 장 이경로	02-2080-7568

I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	30,000

ㅍ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u>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u>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워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u>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u>,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 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 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 · 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요건('II.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 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구 성: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 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 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과(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 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 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여부를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 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

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 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 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 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 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예시)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 하는 경우 등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밭작물(식량류) 채 소	1.5ha이상 1.5ha이상	
- 노지채소 - 시설채소 과 수	1.0ha이상 900평이상 0.75ha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훼- 절화류- 분화류특용작물-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시설 600평이상 시설 450평이상 100평이상 150평이상 60평이상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기타 버섯 품목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약용작물 인 삼 축 산 한 우 - 젖 소 - 돼 지 	1.5ha이상 1.5ha이상 25두이상 25두이상 500두이상	번식우는 33두 이상착유마리수 기준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 흑염소 - 꽃사슴 - 레드미어사슴 - 엘크사슴 - 기타 가축 	15,000수이상 250두이상 65두이상 100두이상 55두이상	- 수컷 기준 - 수컷 기준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 묘목생산 - 밤	5ha이상 500평이상 1.2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